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07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천준호·강준현·김동아

민병덕 · 김남근 · 이해식

추미애 · 김현정 · 이용우

한민수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2장제1절에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의무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증권시장 밖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되는 경우당해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 이후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등의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의 수 이상의

주식을 의무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채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의 행사로 의결 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때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 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 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 함한다)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등의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의 수 이상의 주식을 의무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 ④ 제13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은 의무공개매수에 준용한다. 이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로, "주식등"을 "주식"으로 본다.
- 제146조의3(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의무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등) ①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매수 또는 전환사채권등의 권리의 행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이하 "선행매수등"이라 한다)을 한 날(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날이 있는 경우 그 날로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의무공개매수공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 1.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2.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 3.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 4.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만, 제146조의2가 정한 수이상의 주식수를 기재한다.
- 5. 의무공개매수 기간·가격·결제일 등 의무공개매수조건
-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34조제2항(다만, 제4호의 경우 제146조의2가 정한 수 이상의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자"로, "공개매수신고서"는 "의무공개매수신고서"로, "공개매수공고일"은 "의무공개매수공고일"로 본다.
- ③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은 의무공개매수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신고서"는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로, "공개매수설명서"는 "의무공개매수설명서"로 본다.
- 제146조의4(의무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매수(의무공개매수기간 중 그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선행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1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응모"는 "의무공개매수 응모"로, "응모주주"는 "의무공개매수 응모주주"로 본다.
- 제146조의5(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의무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 제146조의6(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과거 매수가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의무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공개매수자는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의무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에 의무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공개매수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의무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의무공개매수자가 의무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④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는 "의무공개매수결과보고서" 로 본다.
- 제146조의7(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① 선행매수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매수등을 한 다음 날부 터 의무공개매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제146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의무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3. 제146조의4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철회 사유, 절차를 위반하여 의 무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이 경우 "선행매수등을 한 다음날"을 "철회한 다음날"로 본다)
 -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상당기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46조의2제2항·제3항, 제146조의3제1항 또는 제14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매수한 주식(선행매수등을 한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146조의8(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공개매수자 의 특별관계자,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 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

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의무공개매수공고,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정정신고서,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의무공 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조의4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신고 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사본 에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 매수 철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 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 6. 의무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 37조를 위반한 경우
- 7. 제146조의4제1항 또는 제14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9조제2 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 8. 제146조의5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 9. 제146조의6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한 경우
- 10. 제146조의7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

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44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146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제445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46조의7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① 이 절에서 "의무공개
	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
	여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다)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u>
	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
	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
	<u>한다.</u>
	② 증권시장 밖에서 주권상장법
	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
	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
	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한
	<u>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u>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발

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25이상 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되는 경우 당해 매수등(이하 "선행매 수"라 한다) 이후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등의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의 수 이상의 주식을 의무공개 매수 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 채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의 행 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 한 때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 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 주식의 100분 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발 행 주식등의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의 수 이상의 주식을 의무공개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33조제2항, 제4항 및 제5 항은 의무공개매수에 준용한다. <u><신</u>설>

- 이 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 를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 로, "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 수"로, "주식등"을 "주식"으로 본다.
- 제146조의3(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의무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등)
 ①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매수 또는 전환사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이하 "선행매수등"이라 한다)을 한 날(대통령 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날이 있는 경우 그 날로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의무공개매수공고"라한다) 하여야 한다.
 - 1.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2.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 3.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 4.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및 수. 다만, 제146조의2가 정한 수 이상의 주식수를 기재

한다.

- 5. 의무공개매수 기간가격결제 일 등 의무공개매수조건
-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34조제2항(다만, 제4호의 경우 제146조의2가 정한 수 이 상의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제 3항부터 제5항까지 의무공개매 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 수자"는 "의무공개매수자"로, "공개매수신고서"는 "의무공개 매수신고서"로, "공개매수공고 일"은 "의무공개매수공고일"로 본다.
- ③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은 의무공개매수신고에 관 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신 고서"는 "의무공개매수 정정신 고서"로, "공개매수설명서"는 "의무공개매수설명서"로 본다.

제146조의4(의무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의무

<신 설>

<신 설>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매수(의무공개매수기간 중 그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선행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9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응모"는 "의무공 개매수 응모"로, "응모주주"는 "의무공개매수 응모주주"로 본 다.

제146조의5(의무공개매수에 의하 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의무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 함한다)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 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 지 못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신 설>

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제146조의6(의무공개매수의 조건 과 방법)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과거 매수가격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 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의무공개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응모한 주식의 추어 미달하 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공 개매수자는 응모한 주식의 총수 가 의무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총 수를 초과할 경우에 의무공개매 수 예정주식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설>

의무공개매수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의무공개매수공고에 게 재하고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의무공개매수자가 의무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④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관하여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는 "의무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본다.
- 제146조의7(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① 선행매수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매수등을 한다음 날부터 의무공개매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행사할 수 없다.
 - 1.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기 간 내에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46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의무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경우

- 3. 제146조의4에 따른 의무공개 매수 철회 사유, 절차를 위반 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이 경우 "선행매수등을 한 다음날"을 "철회한 다음날"로 본다)
-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상당기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의 처분을명할 수 있다.
- ③ 제146조의2제2항·제3항, 제 146조의3제1항 또는 제146조의 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 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매수한 주식(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

<u><신</u>설>

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주식(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의8(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의무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공개매수 자의 특별관계자, 의무공개매수 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 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의무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 1.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4
 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
 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
 나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 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3. 의무공개매수공고, 의무공개매수정 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정 정신고서,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의무공개매수결과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 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 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 매수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

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 조의4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 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 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사본에 의무공개 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 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정 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 6. 의무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 7. 제146조의4제1항 또는 제146
 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
 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
 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 8. 제146조의5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매수등을 한 경우
- 9. 제146조의6을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를 한 경우
- 10.
 제146조의7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선행매수한
 주식에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 15. (생 략) <u><신 설></u>

16.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 략) <u><신 설></u>

20. ~ 48. (생략)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
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
반한 경우
제444조(벌칙)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146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
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16.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u>.</u>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제146조의7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0. ~ 48. (현행과 같음)